

『평생학습사회』 발간규정

제정: 2004. 12. 20
제1차 개정: 2005. 10. 04
제2차 개정: 2007. 10. 08
제3차 개정: 2008. 10. 06
제4차 개정: 2012. 08. 17
제5차 개정: 2014. 01. 01
제6차 개정: 2014. 07. 15
제7차 개정: 2017. 06. 01
제8차 개정: 2017. 11. 27
제9차 개정: 2020. 12. 11
제10차 개정: 2021. 1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인 『평생학습사회(平生學習社會,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이하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주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게재 원칙)

- ① 본 학술지의 발행에 관계하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투고자 등은 학술지 발행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본 학술지는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이론적으로 투영하고 설계하며, 그 현상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교육학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게재 하되, 이 가운데 평생학습 관점과 철학, 학습사회, 성인고등교육체제, 원격교육 방법 및 전략 등의 분야를 다룬 연구물에 중점을 둔다.

제4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발간 시기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5조(게재논문 분야) 게재논문의 주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평생학습과 학습사회의 개념, 철학, 역사, 이론, 연구방법 등에 관한 논문
- ②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성인고등교육체제 디자인과 제도화 등에 관한 논문
- ③ 그러한 맥락에서의 원격교육 방법 및 전략 등을 다룬 논문

제6조(원고 모집 시기) 원고 모집 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회지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원고 제출 시 평생학습사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de.jams.or.kr>)의 논문등록 양식에 따라 논문 정보, 저자 정보(공동저자 포함)를 입력하고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상세)를 첨부하여 논문 원문파일과 함께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격교육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에 참가한다.
- ② 위원장은 원격교육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 ③ 위원은 연구실적,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분포가 되도록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발간 계획 수립
-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③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 ④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 ⑤ 편집 체제에 관한 사항 결정
- ⑥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

제10조(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과 임기)

- ① 편집위원장
 - 가. 위원장은 국내 원격·평생교육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위촉한다.
 - 나.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
 - 가. 교육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 분야의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또는
 - 나. 위의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선임한다.
- ② 심사위원 풀제도(pool system)를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③ 심사위원 배제
 - 가.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논문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12조(논문심사 절차 및 기준)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 ① 심사 절차
 - 가.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수행하며 투고논문의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 나. 본 심사는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비공개로 수행한다.
 - 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의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심사기준
 - 가. 논문 제목의 내용 반영도
 - 나. 영문과 국문 초록의 질
 - 다. 연구의 필요성 및 논리적 타당성
 - 라.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의 일관성
 - 마. 연구 결과 제시, 해석 및 논의의 타당성
 - 바. 연구 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 사. 인용, 참고문헌 등 투고규정의 준수 정도
 - 아. 전체로 본 연구의 질적 수준
- ③ 심사판정

- 가. 계재가: 수정 없이 계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기 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적인 수정내용이 없는 논문
- 나.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 다. 계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④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계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
| 계재가 | 계재가 | 계재가 | 계재가 |
| 계재가 | 계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계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계재가 | 계재가 | 계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계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계재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⑤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논문과 수정보완조치대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조치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재불가’로 처리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치며, 재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계재가’와 ‘계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계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
| 계재가 | 계재가 | 계재가 | 계재가 |
| 계재가 | 계재가 | 계재 불가 | 재검토 |
| 계재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계재 불가 |

⑥ 종합판정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계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⑦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⑧ 논문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모두 익명 처리하되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 ⑨ 투고자가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나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근거사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심사료 및 게재료) 평생학습사회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①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9만 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 ② 논문 게재료는 논문심사 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중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에 한하여 편당 20만 원을 부과하며,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논문 분량은 25면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면당 2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사제외(반려)논문으로 결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전액 환불한다.

제14조(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지 내에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 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 제목, 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⑤ 게재논문의 말미에 해당 원고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명기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평생학습사회』 투고규정

제정: 2004. 12. 20
제1차 개정: 2005. 10. 04
제2차 개정: 2006. 08. 30
제3차 개정: 2011. 09. 05
제4차 개정: 2012. 08. 17
제5차 개정: 2014. 01. 01
제6차 개정: 2017. 06. 01
제7차 개정: 2017. 11. 27
제8차 개정: 2020. 12. 11

1. 『평생학습사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의 미발표물에 한하며,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의 채택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논문의 작성 및 제출은 다음의 『평생학습사회』 원고 작성 세칙에 따른다.
4.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ide.jams.or.kr>)에 투고하며, 투고 시 논문 정보(국·영문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와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 정보(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한다.
5. 저자(들)은 논문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로써 게재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한행사 등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에 이양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원 고 작 성 세 칙

1. 원고 작성

- ①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이나 MS-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②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字로 표기하거나 괄호 속에 원어를 표기하며,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 ③ 논문내용을 요약한 국문초록(가로 50~55자, 세로 10행 이내)을 논문 제목, 논문 투고자이름(소속기관, 직위) 다음(주요어 앞)에 제시한다.

- ④ 주요어 명시: 논문의 편리한 검색을 위하여 반드시 논문 주요어 4~5개를 국문 초록 다음(본문 내용 앞)에 명시한다.
- ⑤ 영문초록은 1,0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바로 뒤에 명시한다.
- ⑥ 논문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학술지 편집 기준 25면 이내(표, 그림, 국문 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과할 수 있다.
- ⑦ 투고논문은 논문 제목,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국문초록, 주요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배열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논문 제출

- ① 원고는 내용 면에서 완전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그대로 출판했을 때 발견되는 철자, 띄어쓰기, 구두점 등 맞춤법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 ② 투고논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사 표기를 투고용 논문 파일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 가.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
 - 나.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가하여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
 - 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
 - 라.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연구를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
- ③ 투고논문이 학술지의 편집 양식이나 참고문헌 양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투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논문 편집 기준

- ① 용지종류: A4(국배판) [210*297]
- ② 여백주기: 왼쪽·오른쪽 36mm, 위쪽·아래쪽 39mm, 머리말·꼬리말 12mm
- ③ 문단: 1단, 양쪽흔합
- ④ 본문의 체제별 편집 기준(* 다음 표 참조)

| 구 분 | 문단모양 | | | 글자모양 | | | 비고 |
|-------------|------|-----|---------|------|-----|----------------|---|
| | 정렬 | 줄간격 | 들여쓰기 | 크기 | 서체 | 모양 | |
| 논문 제목 | 가운데 | 160 | 0 | 20 | 신명조 | 진하게 | |
| 성명/소속 | 오른쪽 | 160 | 0 | 11 | 신명조 | 진하게/ 보통 | |
| 요약 | 혼합 | 150 | 10 | 10 | 신명조 | 보통 | |
| 주요어 | 혼합 | 150 | 10 | 10 | 신명조 | 보통 | |
| 본문 (바탕글) | 혼합 | 160 | 10 | 11 | 신명조 | 장평 90 자간 -5 | |
| 제목 | I. | 혼합 | 160 | 15 | 16 | 신명조 | 진하게 위 2행/ 아래 1행 띄움 |
| | 1. | 혼합 | 160 | 15 | 14 | 신명조 | 진하게 위 · 아래 1행 띄움 |
| | 1) | 혼합 | 160 | 10 | 12 | 신명조 | 진하게 위 1행 띄움 |
| | (1) | 혼합 | 160 | 10 | 11 | 신명조 | 보통 위 1행 띄움 |
| 인용 | 혼합 | 150 | 좌우여백 10 | 10 | 신명조 | 보통 | |
| 표/ 그림 | 제목 | 가운데 | 160 | 0 | 11 | 중고딕 | 보통 <표 1> [그림 1] 인용했을 경우 출처를 밝힐 것 |
| | 내용 | 혼합 | 150 | 0 | 9 | 신명조 | 보통 |
| 각주 | 혼합 | 130 | 내어쓰기 10 | 9 | 신명조 | 보통 | |
| 참고문헌 | 혼합 | 160 | 내어쓰기 30 | 11 | 신명조 | 장평 90 자간 -5 | |
| 영문 | 제목 | 가운데 | 160 | 0 | 20 | 신명조 | 진하게 |
| | 성명 | 오른쪽 | 160 | 0 | 11 | 신명조 | 진하게 |
| | 초록 | 혼합 | 160 | 10 | 10 | 신명조 | 보통 |

4. 논문의 저자

① 논문의 저자가 단독저자(이자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각주 표기 없이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만약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만 각주로 표기한다.

예) 단독저자: 홍 길 동 v(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동저자: 홍 길 동 v(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 순 희* v(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 철 수 v(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주 표기: * 교신저자: 김순희 (asd@knou.ac.kr)

5. 본문 작성

- ① 본문에 언급한 인용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포함해야 하며, 인용문헌과 참고 문헌의 저자명과 발행 연도 등 세부 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 ② 각주는 내용각주의 경우에만 하단에 일련번호로 별주 처리하고, 출처를 밝히기 위한 참고각주의 경우에는 본문 중에 삽입한다.

6. 본문 내의 인용

- ①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 문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본문에서 분리하여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②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
 -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 예) 이에 대해 홍길동(1993)은 …
 홍길동(1993, p. 25)은 …
 - 나.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명은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며, 4인 이상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제시하고 나머지 저자명은 국문의 경우 ‘○○○ 외’, 영문의 경우 ‘○○○ et al.’로 나타낸다.
 - 예) 홍길동 · 김순희 · 정돌석(1993)은 …
 홍길동 외(1993)는 …
 Anderson et al.(1990)은 …
 단, Anderson과 동료들(1990)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인용문헌의 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예) 홍길동(1993, p. 25)은 …
 홍길동(1993, pp. 25-27)은 …
 단, 홍길동(1993: 25)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 사이는 쌍반점(;)으로 가르며 여러 문헌을 기재할 경우 국문을 먼저 기재한다. 국문 참고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 참고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 예) 한 연구(홍길동, 1993)에 따르면 …

연구들(박동수, 2001; 홍길동, 1993; Anderson, 1990; Taylor, 1985)에 따르면 … 나. 인용하는 내용이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인용문의 마지막에는 인용 내용에 따라 ‘(피면담자).’ 혹은 ‘(저자명, 연도, 면수).’의 순서로 마무리한다. 인용문의 마침표는 괄호 뒤에만 기재한다.

예) 이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가 20년, 이 사람들이 끈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래도 그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우 리를 잘 알죠.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설봉대안학교 최지은 교장).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관의 참여로 이루어 내는 것이 이 지역의 전략 이었다. 결국 이곳에서는 민간에서 하나의 조직 틀에서 씨앗처럼 가지 고 있던 소망과 작은 활동들을 분화시켜서 특정 분야 전문기관으로 자 리 잡게 만들어 올 수 있었다(홍길동, 1994, pp. 23-24).

- ④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용문헌의 면수를 반드시 포함하며, 재인용 여부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예) 홍길동(1993)은 …을 …했다(김순희, 1994, p. 33, 재인용)

- ⑤ 본문 내에 단행본이나 논문 제목을 표기할 때에 국문의 경우 논문 제목은 훌낫표(『 』)로, 단행본 제목은 겹낫표(『 』)로, 영문의 경우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 ”)로, 단행본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이때 영문 단행본이나 논문 제목에서 각 첫 글자를 대 문자로 표기한다.

예) 「평생학습의 의미에 관한 연구」(논문)

『원격교육의 이해』(단행본)

“ALLEE Successful Aging Study” (논문)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단행본)

- ⑥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며, 표에는 < >, 그림에는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가운데 정렬로 제시한다. 표와 그림에 출처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그 출처를 밝힌다.

<표 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 | |
|----|--|
| 예) | |
| |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996), p. 24.



[그림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도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996), p. 24.

- ⑦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7. 참고문헌 작성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제시하되,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 ②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韓, 中, 日, 西洋 문헌의 순으로 열거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팔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한다.
- ③ 동일한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먼저 출판된 저술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다. 동일한 저자의 저술로서 동일한 연도에 출판된 문헌을 두 편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발행 연도의 말미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 ④ 출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인쇄되지 않은 출판할 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발행 연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 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 ⑥ 참고문헌의 작성 방식은 다음에 제시한 방식을 따르고 영문인 경우에는 APA 방식에 따른다.

가. 단행본의 경우

- 1) 단행본명은 국내서와 일본, 중국 문헌의 경우에는 볼드체로, 영문 문헌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이때 영문 단행본 제목(주제 및 부제)에서 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함을 유의한다.
- 2) 단행본의 경우는 발행처(출판도시 및 출판사명)를 반드시 기재한다. 이때 대표적인 출판도시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도시명: 출판사명’으로 제시하고, 그 외 도시는 미국의 경우에는 ‘도시명, 주명: 출판사명’,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도시명, 국가명: 출판사명’으로 제시한다. 단, 국내 문헌의 경우에는 따로 국가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 3) 다수의 저자 표기는 국문은 중점으로, 영문은 쉼표(,)와 &로 표시한다. 편저의 경우에는 편저 여부를 밝힌다.
- 4) 단행본의 개정판이나 증보판의 경우 개정 및 증보 여부를 밝힌다.
- 5) 위의 형식을 지키되 마침표와 띄어쓰기에 대해 아래의 각 예를 참조하여 유의해서 표기한다.

예) 김순희(2005). *한국교육고용폐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길동 · 김순희 · 이철수(2003). *원격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홍길동(2003). *원격교육의 이해(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송영배 (편). (1997). *불교에서 나온 말*. 서울: 대원정사.

Sternberg, R. J. (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t, E. J., Edison, M. I., Pascarella, E. T., Terenzini, P. T., & Nora, A. (2001).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Locke, E. A., & Dunnette, M. D. (Eds.). (1985).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나.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 1) 반드시 권수, 호수, 면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2) 국문의 경우에는 권수는 볼드체로, 호수는 팔호 안에 정자체로 표기하며, 학회명은 제외한다. 면수는 ‘시작 면수—끝 면수’로 표기한다.
- 3) 영문의 경우에는 권수는 이탤릭체로, 호수는 팔호 안에 정자체로 표기하며, 학회명은 제외한다. 면수는 ‘시작 면수—끝 면수’로 표기한다. 또한 논문 제목(주제 및 부제)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함을 유의한다. 이때 정기간행물명은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0). 원격교육의 평가. *평생학습사회*, 5(1), 2-20.

Hall, R. H. (1996).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90-104.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다. 학위논문의 경우

- 1) 학위논문은 학위 종별 및 대학원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일반대학원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대학원명을 밝힌다.

예) 홍길동(2005). **평생학습사회의 의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 대학교 교육대학원.

Lee, H. (2008). *Students' perceptions of peer and self assessment in a higher education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라.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 1) 국문 자료의 경우는 ‘인터넷 자료 출처의 주소(검색일: YYYY. M. D)’의 형태로 표기하며, (검색일) 앞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2) 영문 자료의 경우는 ‘Retrieved M, D, YYYY, from 인터넷 자료 출처의 주소’ 형태로 표기하며,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홍길동(2013). 교육개혁의 방향. <http://www.knou.ac.kr> (검색일: 2013. 6. 20)

Phillips, P. (2008). Student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group and individualized feedback in online courses. Retrieved August 26, 2008, from <http://www.knou.ac.kr>

마. 번역본 자료를 인용한 경우

- 1) 저자명과 번역본 출간 연도를 맨 앞에 표기하고, 역자명은 번역본 제목 뒤의 괄호 안에 제시한다. 원서의 출간 연도는 마지막에 표기한다.

예) Surowiecki, J. (2005). **대중의 지혜**(홍대운·이창근 공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원저는 2004년 출간)

바. 편집한 단행본 속의 글인 경우

- 1) 인용한 글의 저자와 제목을 먼저 표기한 다음 단행본의 저자와 제목을 표기한다. 단행본의 저자와 제목 사이는 쉼표(,)로 구분하며 영문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앞에 ‘In’을 붙인다. 단행본 속 해당 글의 면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pp. 시작 면수-끝 면수)’의 형태로 표기한다.

예) 윤여각(2006). 문화교육의 장들. 조용환 · 윤여각 · 이혁규, **문화와 교육** (pp. 171-199).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Rubenson, K. (1989). Sociology of adult education. In S. B. Merriam & P. Cunningham (Eds.), *Handbook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pp. 51-69). San Francisco: Jossey-Bass.

⑦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저자정보

① 참고문헌과 영문초록 사이에 저자정보를 삽입해야 한다. 사진을 삽입한 후 성명, 소속과 직위, 연락처, 연구분야를 차례로 기입한다. 영문 이름은 성, 이름의 순으로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표기하며, 연구분야는 2~3개를 기입한다. 사진의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한다.

예)

사진

성 명: 홍길동 (Hong, Gildong)

소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연 락 처: adg@knou.ac.kr

연구분야: 교육공학, 이러닝, 학습동기

사진

성 명: 김순희 (Kim, Sunhee)

소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원

연 락 처: fffj@knou.ac.kr

연구분야: 평생교육, 고등평생학습체제

9. 영문초록(영문원고는 국문초록)

- ① 국문원고의 경우는 논문제출 시에 1,0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 ② 영문원고의 경우는 논문제출 시에 35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단, 국외 저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영문초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저자 이름은 앞의 저자정보에서와는 달리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Key words는 첫 글자를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표기한다.

예)

The Difference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Gildong Ho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unhee Ki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ey words: smart education, educational system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JLLS) is the professional journal published by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I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NOU). JLLS is published four times a year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The journal publishes the articles concerned with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executive secretary of JLLS :
jlls@knou.ac.kr, or Editor-in-Chief, Prof. YeoKak Yun :
ykun@knou.ac.kr

『평생학습사회』 윤리규정

제정: 2007. 11. 30
제1차 개정: 2014. 01. 01
제2차 개정: 2014. 07. 15
제3차 개정: 2017. 06. 01
제4차 개정: 2018. 04. 10
제5차 개정: 2018. 12. 06
제6차 개정: 2020. 01. 14
제7차 개정: 2021. 09. 2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평생 학습사회」의 발간에 따른 제반 윤리규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윤리의무) 본 학술지의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투고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투고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투고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의미와 유형) 본 학술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부정행위 등 ‘연구 부적절 행위’를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각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식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 결과’ 등의 출처를 학술 인용 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본 학술지에서는 학위논문을 수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자 표시를 규제한다.
 - ①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수정논문일 경우 제목에 이에 대한 사사 표기를 해야 하며, 참고문헌에 해당 학위논문을 기재해야 한다.
 - ② 저자를 2인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학위논문 제출자가 제1저자이어야 하고, 다른 저자들은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기하되 해당 논문의 작성에 각

자가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수행 방법, 연구 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이상에서 정의된 연구 부적절 행위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를 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5조(이해상충)

1.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끼리 상호 호혜를 배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

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의 제보와 판정)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는 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3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50일 이내에 심의·판정해야 한다.
5.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논문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의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위원회는 피심의자에게 위원회의 절차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심의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한 부정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3~5년간 투고 금지’, ‘게재 취소와 게재논문 목록에서 삭제’,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재심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피심의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IRB 승인)

1. 투고논문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이나 심의면제를 받아야 한다.
2.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은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 본 학술지에서는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1.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제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제재를 신청할 때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고논문의 유사도 검사 결과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편집위원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심사위원 윤리규정)

1. 학술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서 학술지 발간규정의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

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1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투고자들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사회』 제18권 제4호 투고논문까지 유예기간을 둔다.